

대한국제법학회 투고논문 심사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	개정
2005년	2월 26일	개정
2006년	4월 17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7월 26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3년	5월 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이하 '논총')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 ① 논총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논총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연속 게재금지 조항의 폐지, 2001년 3월 24일 이사회 결정)
- ⑤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파일 및 6만원의 심사료를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학회 가입 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심사료가 면제된다.

제3조 (심사위원의 구성)

- ① 심사위원단은 학회의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②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논총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방법)

- ①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불가
-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조의 1 (심사기준)

논문이 논충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6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논문게재료 등)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편

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게재료는 14만원으로 하나 학회가입 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에게는 이를 면제한다. 단,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는 30만원으로 한다.

- ② 논문의 기준이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 부과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포인트, 행간 160으로 한 A4용지 15매(200자 원고자로는 140매) 초과시에는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로는 8매당 1만원씩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